

의안번호	제15호
의결연월일	2024. 2. 22.

##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, 제안자 : 2024년 2월 13일, 조용훈 의원 등 8명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13일

다. 상정일자 : 2024년 2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#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조용훈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논산시민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안전보험 및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(안 제5조)
- 보험금 청구 및 지급(안 제7조)
- 시민안전사고 위로금 지원(안 제10조)
- 지원대상(안 제11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